

#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A-20(1) 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35층 14개동 총1,1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배정 세대수	입주예 정시기
		주택공급면적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72A	72.3007	23.2019	95.5026	48.0053	143.5079	3(3)	'22년 12월 (예정)	
	75A	75.9964	25.8053	101.8017	50.4591	152.2608	27(11)		
	84A	84.9994	28.5292	113.5286	56.4379	169.9655	61(31)		
	84B	84.9903	28.2094	113.1997	56.4308	169.6305	22(11)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양주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				
		72A	75A	84A	8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1)	5(2)	12(6)	4(2)	22(11)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5(2)	12(6)	4(2)	22(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5(2)	12(6)	4(2)	21(10)
	중소기업 근로자	-	5(2)	12(6)	4(2)	21(10)
	장애인	1(1)	5(2)	11(6)	4(2)	21(11)
	철거민	-	2(1)	2(1)	2(1)	6(3)
소계		3(3)	27(11)	61(31)	22(11)	113(56)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기관추천(장애인) 배정 안내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				
		72A	75A	84A	84B	계
장애인 배정내역	경기도	1(1)	3(1)	6(3)	2(1)	12(6)
	서울특별시	-	2(1)	4(2)	2(1)	8(4)
	인천광역시	-	-	1(1)	-	1(1)
	소계	1(1)	5(2)	11(6)	4(2)	21(11)

####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0.02.05.(수)	일간신문 및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홈페이지(www.okjung-yulim.com)
건본주택 개관(예정)	2020.02.14.(금)	양주시 옥정동 106-4번지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건본주택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0.02.18.(화)	<b>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b>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 청약 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0.02.26.(수)	한국감정원 청약홈(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에서 조회가능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 II

##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0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분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감정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첨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III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홈)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IV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02.05.(수)**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www.okjung-yulim.com](http://www.okjung-yulim.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2.05.(수)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관련문의 : 031-868-8110